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경선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04 |
|----------|-----|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29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찬 성 자 : 김호진 · 장숙이 · 박경희
이진삼 · 윤선경 · 서호성
김혜미 · 김용일 · 류상호
이기수 · 홍길식 · 황춘하
김용일 · 김순길 의원
(14명)

1. 주문

- 가. 구청장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단행한 전문위원 인사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기준을 수립·시행하라.
- 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의회 일반직 사무직원 인사시 의장 추천에 따른 임명 절차와 의회사무국장예의 인사권 위임 사항을 준수하라.
- 다.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사무관의 전문위원 임명을 지양하고 별정직 또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
- 라. 구청장은 구의원이 위원인 행정기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구의회 회기기간을 피하는 등 구의원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2. 제안이유

- 가. 구의회 전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 핵심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인사조치를 취하였음.
- 나.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 구는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인사 독단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 다. 이번 전문위원 인사조치를 계기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리 의회의 일치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함.
- 라. 아울러 구의원이 참여하는 행정기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의회 회기기간을 피하여 일정을 잡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 및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3. 결의문 : 붙임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 촉구 결의문

지난 1월 1일에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사무관이 6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의회를 떠나게 되었다. 구청장은 의회의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틀만에 임명장까지 주는 어이없는 인사를 자행하였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는 평소 구청장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로서는 전문위원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정책보좌관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고 구체적으로는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부여하여 의회에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구청장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방의회 발전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전문위원을 의회와의 사전 양해절차마저 무시하며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남발하였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출신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구청장이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의회로 보내는 성의를 보이지진 못할 망정,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내고 빼내어가며 마치 의회를 잠시

쉬었다가는 곳으로 취급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지방분권을 거부하는 정부를 성토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의회를 구청 하부조직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단체장이 어떻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정부의 독단에 맞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회는 구청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고 의회 사무직원은 구청장이 아닌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다. 의회 사무직원들에게 의원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주지 말라. 구청 공무원들에게 의회는 쉽고 편하게 일하는 곳이니 무시해도 된다고 왜곡하여 가르치지 말라.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청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하나. 구청장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단행한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기준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의회 사무직원 임명절차와 인사권 위임 의무를 준수하라.

하나. 구청장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로서 전문위원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

하나.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청 소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구의회 회기기간을 피하는 등 구의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